

1 개정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p>□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일회성 과세 대상 명시</p> <p>○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·수입·사용 허가(제44호)</p> <p>○ <신설></p> <p>○ <신설></p>	<p>□ 일회성 과세 면허 정비</p> <p>○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, 제한물질 취급 신고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·수입·사용 허가(제44호)</p> <p>○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또는 신고(제46호)</p> <p>○ 「원자력안전법」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허가,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연구 용·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(제47호)</p>

□ 개정내용

- 면허 성격 및 타 면허와의 유사성을 고려한 일회성 면허 지정
 -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상 제한물질 취급 시, 영업자(사업자) 단위의 영업허가(정기과세 대상)에서 금지물질, 허가물질과 동일한 품목별 허가·신고로 변경
 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는 일회성 과세하는 면허인 건축허가와 유사함을 고려
 - 「원자력안전법」 개정에 따른 면허 과세대상 정비 및 시설착공을 위해 한 번만 부여하는 건설허가는 일회성 과세